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 First Batch of Amendments to BEPS Bill](#)

홍콩: BEPS 법안에 대한 첫 개정안 발표

홍콩 정부는 기존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제 6 차 통화위원회(홍콩 금융관리국이자 사실상의 중앙은행) 회의를 통해 세제개편 방향을 확정 후, 그 첫 번째 조치로써 2018 년 4 월 24 일, 지난 2017 년 12 월 29 일 공표한 BEPS 법안(i.e. the Inland Revenue (Amendment) No. 6 Bill 2017)의 첫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홍콩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국가별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ing) 작성기준을 포함해 완화된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및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작성 기준과 국내특수관계자 거래, 지적재산권 및 고정사업장 관련 이전가격규정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1.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면제기준 및 이행시기

종전 BEPS 법안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요건((i)사업규모 또는 (ii)특수관계자 거래규모)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종전 제출면제기준상 사업규모 기준 및 준비기한에 대해서만 개정된 것으로, 그 밖의 사항은 종전 BEPS 법안과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도 홍콩 정부는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16 May 2018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동 개정안을 통해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면제기준 중 사업규모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규모 기준]

구분	기존 BEPS법안	개정안
총 연간 매출액	2억 HKD 미만 (약 274억원)	4억 HKD 미만 (약 548억원)
총자산	2억 HKD 미만 (약 274억원)	3억 HKD 미만 (약 411억원)
종업원수	100명 미만	변경내용 없음

[거래유형별 특수관계자 거래규모기준]

구분	기존 BEPS법안	개정안
유형자산의 이전(금융, 무형자산 제외)	2억 2천만 HKD 미만 (약 301억원)	변경내용 없음
무형자산의 이전	1억 1천만 HKD 미만 (약 150억원)	
금융자산 거래	1억 1천만 HKD 미만 (약 150억원)	
기타 거래(예: 용역수익, 로열티수익 등)	4천 4백만 HKD 미만 (약 60억원)	

[문서화 준비기한]

구분	기존 BEPS법안	개정안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6개월 이내	9개월 이내

2. 정상가격기준

홍콩 정부는 기존 BEPS 법안에 포함된 이전가격 세제 규정에 독립기업간 적용 조건과 최신 OECD 이전가격 지침을 반영한 BEPS 법안 개정안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사분위범위안에 위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뢰성 높은(reliable)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가치 측정방법(DEMPE)에 대한 특별규정 (S.15F) 시행일

홍콩 정부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가치 측정방법 (DEMPE)에 대한 특별규정 (S.15F)*”의 시행시기를 기존 2018년 4월 1일에서 2019년 4월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 “S.15F”는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만으로 해당 무형자산의 활용에 따른 소득을 향유할 수 없으며 무형자산의 개발(development), 유지(maintenance), 증진(enhancement), 보호(protection) 및 활용(exploitation)과 관련된 주요 가치 창출 기

능을 수행한 관계기업들은 독립기업 원칙 적용지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은 없는 상태임.

4. 국내 특수관계자간 거래

홍콩 이전가격 규정은 국제거래는 물론 국내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 역시 규제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BEPS 법안 적용 및 면제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5월말 2차 개정안을 통해 특정 국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면제규정을 공표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5. 국가별보고서의 현지법인 대리신고(surrogate filing)*시 금액기준 및 이행시기

- 금액기준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i)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이 정한 기준금액. 다만, 금액기준이 없을 경우 ii)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통화기준 7억 5천만 유로 상당액(다국적기업 그룹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

- 제출의무

홍콩 과세당국에 대리신고를 통한 국가별보고서 제출방식을 채택하였으나 특정 사유(예: 홍콩과 조세조약 또는 국가별보고서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지 아니 한 경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의 홍콩 현지법인이 국가별보고서를 홍콩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그룹의 특정 법인을 지정하여 모회사 대신 국가별 보고서를 해당 거주지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계획임.

[기타 주요 개정사항]

1. 고정사업장 규정(S.50AAK) 시행시기

홍콩 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BEPS 법안의 일환으로 공표된 고정사업장 규정 (S.50AAK)의 시행시기를 기존 2018년 4월 1일에서 2019년 4월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2. 특별규정(S.15BA)

홍콩 정부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규정(S.15BA)*의 적용을 받는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S.15BA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의도변경 (예: 재고품목을 매매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또는 그 반대로)시 시장가격이 납세의무자의 의도변경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시장(공정)가치 이외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법률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Taiwan: Country-by-country reporting for 2017 corporate income tax return

대만: 2017년 법인세 신고 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의 이전가격 관련 정보 제출 의무 추가

대만은 OECD BEPS Action Plan 13(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총 3단계 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MF),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LF),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로 구성된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을 자국의 내국법에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TWD 27 billion (약 1조원)을 초과하는 대만 소재 최상위 지배기업,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으로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리인 또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대만 현지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어 또는 영어로 대만 과세당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다음의 정보를 담은 이전가격 신고 서식(transfer pricing disclosure forms)을 2017년 법인세 신고 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12월말 법인: 5월 31일)법인세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신고 서식 상 공개대상정보 및 범위]

1. 기본정보

- A. 2016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 B. 국가별보고서가 요구되지 않는 기준금액(최종 모회사/대리 모회사의 기능통화 기준)

2. 다국적기업 그룹이 대만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 A. 최종 모회사/대리 모회사의 회사명, 납세자 식별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소재지국/조세관할 지역 및 국가 코드(Country Code)

3. 다국적기업 그룹의 대만 현지법인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A. 앞서 언급 한 규정에 따라 대만 기업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B6 페이지에 명시

또한, 뉴질랜드는 현재까지 대만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모회사 또는 대리 모회사가 대만기업으로서 뉴질랜드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2017 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로 그 최종 모회사 또는 대리 모회사(또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다른 대만 현지법인)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대만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을 위해 현재까지 31개국과 협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대만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를 통해 당국간 협정 체결 국가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대만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당국간 협정에 참여(체결완료 1개국, 협상진행 31개국)한 국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국가 현황]

No.	조세관할 지역	체결여부
1	New Zealand	체결 완료
2	Australia	협상 진행 중
3	Austria	
4	Belgium	
5	Canada	
6	Denmark	
7	France,	
8	Gambia	
9	Germany	
10	Hungary	
11	India	
12	Indonesia	
13	Israel	
14	Italy	
15	Japan	
16	Kiribati	
17	Luxembourg	
18	Macedonia	
19	Malaysia	
20	the Netherlands	
21	Paraguay	
22	Poland	
23	Senegal	
24	Singapore	
25	Slovakia	
26	South Africa	
27	Swaziland	
28	Sweden	
29	Switzerland	

30	Thailand	
31	the U.K.	
32	Vietnam	

CBDT draft notification – proposed amendment to advance ruling rules and forms in line with BEPS Action Plan 5

인도 과세당국의 개정안 예고 – BEPS Action Plan 5에 부합하는 사전답변(advance ruling) 규정 및 서식 개정안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조세회피 및 세원잠식) Action Plan 5(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따르면 사전답변 담당기관이 발행한 고정사업장 관련 심사결정은 납세자와 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특수관계법인들의 거주지국뿐만 아니라 직계모회사 및 최종모회사의 거주지국과도 교환되어야 합니다. BEPS Action Plan 5상 권고사항 이행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거주자 직계모회사 및 최종모회사의 법인명, 주소, 거주지국 등의 상세정보가 신청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답변 서식 (Form 34C 및 34D) 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7년 인도 재정법(the Finance Act, 2017) 도입에 따라 인도 소득세법(the Income-tax Act, 1961)상 사전답변 신청인(applicant)의 정의가 개정되었으나 아직 인도 소득세법 시행령 (the Income-tax Rules, 1962) Rule 44 (사전답변 획득) 및 관련 서식에는 지난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 과세당국(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은 소득세법 시행령 Rule 44E 및 Form 34C, 34D, 34DA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Rule 44E

본 입법예고에 포함된 Rule 44E의 개정내용은 지난 2017년 개정된 재정법 개정안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Form No 34C

Form No 34C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납세의무자)
 - 신청인이 소재한 국가 혹은 특정 조세관할 지역(specified territory)의 정부에서 사용 및 인정하는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registration number), 납세자 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및 그와 동등한 식별번호

- 신청인의 모회사
 - 신청인의 직계 및 최종모회사의 법인명, 주소, 거주지국, 소득세 번호(Permanent Account Number, PAN) (보유 시)
 - 신청인의 직계 및 최종모회사가 소재한 국가 혹은 특정 조세관할 지역의 정부에서 사용 및 인정하는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 번호 및 그와 동등한 식별번호

Form No 34D

- Form 34D에는 거주자 신청인과 거래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비거주자 법인에 대하여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소득세번호 (보유 시)
 - 비거주자 법인이 소재한 국가 혹은 특정 조세관할 지역의 정부에서 사용 및 인정하는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 식별번호 및 그와 동등한 식별번호
 - 신청인의 직계 및 최종모회사의 법인명, 주소, 거주지국, 소득세 번호 (보유 시)
 - 비거주자 법인의 직계 및 최종모회사가 소재한 국가 혹은 특정 조세관할 지역의 정부에서 사용 및 인정하는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 식별번호 및 그와 동등한 식별번호

KPMG 의견

인도 정부는 BEPS 다자간 협약(Multilateral Instrument; MLI) 서명국으로써 BEPS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재정법 및 조세조약 등을 통해 다양한 BEPS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도 과세당국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BEPS Action 5에 기초한 사전답변(AAR) 서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직계 및 최종모회사의 소득세번호 보유여부 등 잠재적인 이슈사항들이 존재하는 바, BEPS Action 5에 부합하는 서식 개정에는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추가 정보제출 의무는 비거주자 법인들의 규제준수 부담(compliance burden)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많은 수의 인도 내 사전답변 요청 건들이 적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정보 제출의무는 사전답변 획득절차를 더욱 지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Denmark: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court applies contemporaneous preparation rule

덴마크: 동시적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규정 적용판례

덴마크 동부 고등법원(Østre Landsret)은 지난 3월 한 획기적인 이전가격 판례(landmark transfer pricing case, B-2008-16, 28 March 2018)를 통해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음과 동시에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기한 등 덴마크 이전가격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본 판결은 덴마크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납세의무자)의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이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적 이전가격 보고서

덴마크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보고서를 동시기준(contemporaneous basis)으로 세무조정신고일까지 작성 및 구비하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 판례는 이전가격 보고서 규정 및 기업정보의 제출 의무에 대한 덴마크 과세당국의 방침과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보고서 요청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한편, 매년 법인세신고일까지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 및 구비해야 합니다.

KPMG 의견

올해 초 개정된 덴마크 이전가격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향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입증하기 위해 매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동시적 이전가격 보고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12월말 법인의 경우 6월30일; 1월~3월말 법인의 경우에는 8월1일) 작성 및 구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2018년 1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덴마크 동부 고등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동시적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의무가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이전가격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구비하지 아니할 경우 정상가격 부합여부에 대한 검증 등 이전가격 이슈에 대한 덴마크 과세당국의 과세권 강화에 힘을 실어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덴마크 과세당국이 제기하는 이전가격 이슈 및 세무조사에 의한 잠재적 과세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납세의무자는 동시적 이전가격 보고서를 적시에(in a timely manner), 자세히(thorough) 그리고 완전(complete)하게 작성 및 구비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들은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계기로 과거 사업연도(5개년)에 대한 이전가격 의무이행 준수현황 평가를 통해 자체 위험진단 및 불확실성 노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과적이고 정확한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및 구비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